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6호 2023. 11. 03.(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9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3-19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4
- 하동군 고시 제2023-19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3-194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59호 「하동군 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23-138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 하동군 공고 제2023-138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23-139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하동군 공고 제2023-1400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6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73호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23-1375호 하동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77
- 하동군 공고 제2023-1409호 2023년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 입주희망자 공모 공고 81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3-19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3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7
2. 허가연월일 : 2023. 10. 31.
3. 점·사용의 목적 : 통신 전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청암면 상이리 1905, 0.1㎡
(인근 : 상이리 1131-4)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31. ~ 2028.10.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엘지유플러스

하동군 고시 제2023-19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3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8
2. 허가연월일 : 2023. 10. 31.
3. 점·사용의 목적 : 통신 전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1, 0.1㎡
(인근 : 두양리 1073-220)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31. ~ 2028.10.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엘지유플러스

하동군 고시 제2023 - 19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39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0.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718-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39	20231030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47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손오골길 56	20231030	손님을 맞이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옛지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47-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길 30-13	20231030	백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20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62-196	20231030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 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37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110-4	20231030	사천시의 곤명면과 하동군의 북천면의 첫자를 혼용하여 곤북로 로 도로명 부여	

하동군 고시 제2023-19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3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9
2. 허가연월일 : 2023. 10. 31.
3. 점·사용의 목적 : 통신 전주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화개면 삼신리 990, 0.1㎡
(인근 : 삼신리 산209-1)
5. 점·사용의 기간 : 2023.10.31. ~ 2028.10.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엘지유플러스

하동군 공고 제2023-1359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인구소멸지역인 하동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여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에 제공하는 행복택시 대상마을 확대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2조 제1호를 개정(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교통과, 055-880-2396 FAX 055-880-2249, polaris12@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0.7km”를 “0.6km”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읍 면장에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p> <p>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u>0.7km이상</u> 떨어진 마을</p> <p>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p>	<p>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p> <p>----- ----- ----- ----- ----- -----.</p> <p>1. ----- ----- <u>0.6km이상</u>-----</p> <p>2.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23-1380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3. .

제 출 자 :

1. 제안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 및 국정과제에 따라 지역여건, 사무량,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연1회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
- 조직·인력을 핵심분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고자,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변경(제2조 ~ 제3조)
-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30. ~ 11. 5. (6일간)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읍·면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직무) ① ----- <u>담당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기획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u> 또는 <u>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p> <p>가. ~ 바. (생략)</p> <p>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p> <p>가.·나. (생략)</p> <p>다. 산림녹지과장 : <u>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지방녹지사무관</p> <p>라. (생략)</p> <p>마. 시설체육과장 : <u>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제3조의2(국장·과장) ----- ----- -----.</p> <p>1. ----- <u>지방서기관</u> -----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u>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u> - -</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 <u>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u> ----- -</p>

3.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
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
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경제기업과장 :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
관

나. ~ 바. (생략)

3

-----.

가. -----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나. ~ 바. (현행과 같음)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23-138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
제 출 자 :

1. 개정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 및 국정과제에 따라 지역여건, 사무량,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연1회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
- 조직·인력을 핵심분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고자, 진단결과를 활용하여 기능·인력 재배치 및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

구분	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정원	732	374	79	65	19	195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30. ~ 11. 5. (6일간)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개정 2023. . . >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732	374	79	65	19	22	173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701	368	79	40	19	22	173
	4급 소계	5	4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41	19	2	4	3	1	12
	행정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5	5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3					1	2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6	2			2		2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86	101	19	7	4	5	50
	행정		8	8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3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전산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시설		16	6		1		1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0	18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5	2					3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6	3					3
	행정·세무·시설		7	5			2		
	행정·세무·전산·농업		6	4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3	2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통신운영		7	3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8		5				3
	행정·시설·환경		3	3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6		6				
	행정·공업·환경·시설		6	6					
	행정·농업·녹지·환경		6	2					4
	전기운영·기계운영·화공운영		3	2					1
행정·보건진료·간호·의료기술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97	99	20	10	6	9	53
	행정		19	13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행정·시설		11	4				1	6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간호		4		4				
	보건·간호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2	3	2		1	2	4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1	11
	행정·시설		13	8		1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7	3			2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0	7				1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4		4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화공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3	3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83	97	33	6	3	3	41
	행정	22	14			3		5
	세무	1	1					
	사회복지	12	6				1	5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4	2	2				
	간호	9		9				
	의료기술	6		6				
	보건진료	6		6				
	환경	1	1					
	시설	15	10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6	6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2	8				1	3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8	2		1			5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농업	11	9		2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6	6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6	1	5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6	2					4
	행정·농업·시설	9	5		1			3
	행정·보건·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7		4				1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89	49	4	12	3	4	17
	행정		14	7		2	2	1	2
	사회복지·시설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3	1	2				
	운전		2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5	2		2			1
	행정·시설·방호		11	9		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공업		3			3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전산·통신		4	3		1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5	2		2			1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3			1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3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연 구	연구직 계		2	1		1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별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23-139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1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관광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비율 향상 및 한도금액 증액 (안 제26조)

다.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신설 (안 제26조의2)

라. 이중 지원에 관한 상세 규정 신설 (안 제3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 880-2645, FAX 880-2619, e-mail yuna86@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9.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2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지원 보조금
2. 제27조, 제27조의 2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 보조금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중 지원하는 경우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균비 분담액을 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관광사업</u>”이란 「<u>관광진흥법</u>」 제2호에 따라 <u>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u></p> <p>8. “<u>관광사업의 종류</u>”란 「<u>관광진흥법</u>」 제3조제1항의 <u>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u>을 말한다.</p> <p>9. “<u>문화산업</u>”이란 「<u>문화산업진흥기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라 <u>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u>를 하는 <u>산업을 말한다.</u></p> <p>10. “<u>콘텐츠</u>”란 「<u>문화산업진흥기본법</u>」 제2조제3호에 따라 부</p>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이중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지원 보조금

2. 제27조, 제27조의 2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 보조금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중 지원하는 경우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균비

제38조 · 제39조 (생 략)

분담액을 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 제40조 (현행 제38조 및 제
39조와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3-1400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1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액 조정(안 제10조, 11조, 12조)
- 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범위 변경(안 제13조)
- 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비율 및 한도액 조정(안 제16조, 별표9)
- 라. 신·중설기업 보조금 신청 기준일 변경(안 제17조)
- 마. 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18조)
- 바. 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비율 조정 (안 제19조)

- 사.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추가 및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21조)
- 아.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안 제21조의 2)
- 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신설(안 제21조의 3, 별표10)
- 차.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24조)
- 카. 별표, 별표5,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 오류 정정
- 타. 별표4, 별표4의2, 별표6, 별표8 → 도 시행규칙과 일치화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과, 전화 880-2645, FAX 880-2619, e-mail yuna86@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을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제2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9와 같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10퍼센트 이내로 하며”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하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착공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및 제4호”로, “지역특성화 업종”을 “지역특성화업종과 첨단업종”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퍼센트 범위”를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로,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4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군의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연구소와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군에 주민등록은 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 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 환수 또는 전액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 투자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⑥ 이 규칙 제2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별표 4, 별표4의 2, 별표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투자유치 포상 기준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5(0.05%)	5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04(0.004%)	1,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03(0.003%) + 500만원	2,0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02(0.002%) + 5,900만원	1억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①) × 적용율(②)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건축비+시설비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21조의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div 6$$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times 1)]}{3}$$

* 당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전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	5	5% < IRR ≤ 10%	2
15% < IRR ≤ 20%	4	IRR ≤ 5%	1
10% < IRR ≤ 15%	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
 기산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4의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21조의제2항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원)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100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제6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동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환 수 액 = 보조금 x (1 - 평균달성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u>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u>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6]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의제1항제5호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 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척 도	점수
15% 미만	10	25% 이상 ~ 30% 미만	4
15% 이상 ~ 20% 미만	8	30% 초과	2
20% 이상 ~ 25% 미만	6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8]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용자금신청서 상 착공일부
 터 기산

9. 신규고용

신규고용	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	10

* 지원기준 초과 상시고용인원 1인당 0.5점 가점 부여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9]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름

[별표 10]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앞 면]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남, 여) 법인본사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지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설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도외 기업 등 도내이전 <input type="checkbox"/> 전략산업 투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입주 유형 <input type="checkbox"/> 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m ²	m ²
투자사업장			m ²	m ²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	설비투자금액(C=D+E)	
	천원	천원	건설투자비용+기계장 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임대기간	천원	천원

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과건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제12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생 략)

1. (삭 제)

2. (삭 제)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보조금) ① -----

-----10퍼센트 ----- 30억원-----
----- .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건축비)의 100분의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신 설>

제1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지원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 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이전한

50 이내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70퍼센트 -----
----- 30억원 -----

③ -----

----- 준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 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9와 같다. -----

④ -----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개시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7조(신·증설 기업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기업 당 3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① (생략)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10퍼센트 ----- 10억
원-----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신·증설 기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0퍼센트 범위
 에서 별표 7과 같이 하며, -----
 -----.

③ -----
 - 착공신고일-----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외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3.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9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 화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 1. (현행과 같음)
- 2. ----- 1년-----

- 3. -----

----- 10명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1. 제1항제3호 및 4호---지역특성화업종과 첨단업종

-----.
- 2.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분의 25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 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신 설>

업 종

-----.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

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연구소를 관내
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

만, 도내 다른 시·군의 연구
소가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연구
소

와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
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

우

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
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
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

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사업장에
고

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

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
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 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신 설>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
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
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
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
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
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
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
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

부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
후

관리 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
률

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
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
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
우(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

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
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
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
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
제

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
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
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
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
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⑥ 이 규칙 제21조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3 -1373호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격 기준일 : 2023. 07. 01

2. 결정·공시일 : 2023. 10. 31.

3. 결정·공시 필지수 : 1,205필지

4.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3. 10. 31. ~ 11. 30.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우편접수가능

(전자민원)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 청 민원과 공간정보부서(055-88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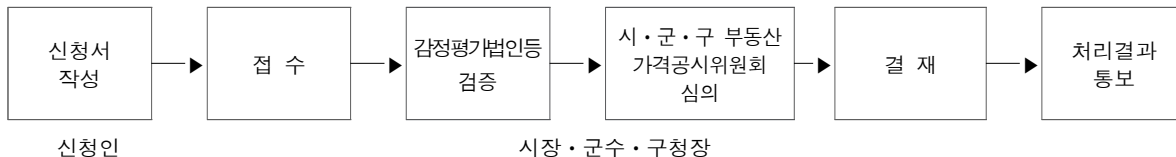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m ²	KRW/m ²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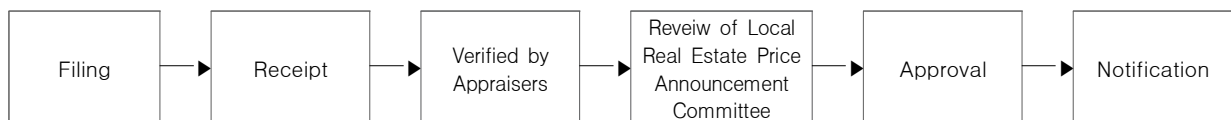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하동군 공고 제2023 - 1375호

하동군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하동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3년 (2025. 1. 1. ~ 2027. 12. 31.)

3. 신청자격

「지방회계법」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하동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복수금고 (제1금고, 제2금고)

5. 신청방법 : 금고별 구분없이 신청하며 신청(제안)서 방문 제출

6. 금고별 취급회계

가.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일부)

나. 제2금고 : 기금, 특별회계(일부)

※ 약정기간 개시일 이후에 설치되는 신설회계 및 기금 등은
제1금고에서 담당한다.

7.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지급
-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판매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 지출원의 지출대행 약정 관련 업무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공고 및 신청절차

가. 금고지정 신청공고

- 공 고 일 : 2023. 10. 31.(화)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공고
-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20.(20일)

나. 관계서류 열람 및 신청서(제안서) 교부

- 기 간 : 2023. 10. 31.(화) ~ 2023. 11. 3.(금)
- 장 소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열람서류 : 2021년 ~ 2022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기타 관련법령
※ 예산(결산)서는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다. 신청(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3. 11. 17.(금) ~ 11. 20. (월) 18:00까지
- 장 소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제출서류 : 군 금고 지정신청서 및 신청안내서 상의 지정서류 일체
- 제출부수 : 13부 (원본1, 사본12)
※ 금융기관장 인감으로 반드시 봉인할 것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별표와 같음

10. 평가방법

가.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나.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주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부금고)로 지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금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하동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 055-880-2292)로 문의 바람.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소 계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강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1점)	(21)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8)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하동군 공고 제2023 - 1409호

서식 7

하동 청년 나눔주택 입주희망자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관내 공실(空室)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3. 11. 3.

하 동 군 수

- 1. 신청기간 : 2023. 11. 3. ~ 11. 10.(7일간) 16:00
- 2. 신청자격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청년 :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

순 위	입 주 자 격	증 병 서 류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등)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2022년 소득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주민등록등본 ※ 신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3. 지원제외 대상 : 임대인의 직계가족
- 4.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입주자격 순위(1·2·3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 임대주택 수량에 따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임차인 확정

○ 결과발표 : 2023. 11. 10. 18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5. 입주가능(예정)일 : 2023. 12. 00.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6.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 대 현 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하동군 관리카드 NO.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28. 해양파크빌 105-403	1	철근 콘크리트	4	-	57.9	500	20	

7.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차인 입주일로부터 산정함.
- 임차인 신청자 중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 > 연령(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저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8.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9. 입주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발 행 처
공통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족관계증명서	읍·면사무소, 홈택스 (인터넷발급가능)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급여 명세서 등)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2022년 소득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방문 발급 시) 군청 재정관리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읍·면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1~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방문 발급) 군청 재정관리과 방문(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온라인 발급)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 * 관할지자체 단체(전체, 전체 선택) / 과세연도(2021~2022년도 선택) / 세목선택(재산세 선택) / 사용목적(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용 기재) / 주민/ 법인번호 뒷자리포함(미포함 선택)

서식 8

하동 청년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하동 청년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본인			
1			
2			
3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하동군에서 공급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